

등록번호	자치행정과-3273
등록일자	2016.2.4.
결재일자	2016.2.4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민방위팀장	자치행정과장	주민자치국장	부구청장	
박병국	전동중	최선희	김종두	전결 02/04 조인동	
협 조	교육지원과장	김판덕			
	평생교육팀장	문미혜			
	지역건강과장	김선찬			
	건강증진팀장	황성기			

2016년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

서대문구
자치행정과

2016년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

민방위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및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재난의 예방·대응·복구를 위한 민방위대를 육성하고자 함

I 교육 개요

1. 법적근거

- 민방위기본법 제23조(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)
-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(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)
-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2조(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계획)
-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-1340(2016.1.22.)호 「2016년 민방위 교육계획 알림」

2. 교육시간 및 내용

교육연차	교육시간	교육방법	교육내용
1~4년차	4시간	집합교육	소양교육(1시간), 실기교육(1시간), 생활정보(2시간)
5년차 이상	1시간	비상소집훈련	비상소집 점검 및 비상대피·급수시설 안내, 민방위대 편성, 임무·역할 고지 등

3. 교육대상 : 20,867명(1~4년차 9,197명 / 5년차 이상 11,670명)

4. 교육내용

- 소양교육 : 민방위 제도 및 운영,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할 20가지, 최근 북한 및 주변국 정세, 국가역사관, 재난안전 등
- 실기교육 : 화재, 교통안전 교육

II 교육 실시

1. 집합교육

■ 기 간 : 2016. 3월 ~ 11월 (09:00~13:00)

○ 기본교육 : 2016. 3월 ~ 6월 (상반기)

○ 보충교육 : 2016. 9월 ~ 11월 (하반기)

※ 선거기간(2016. 3.31. ~ 4.13.) 교육 중단

■ 장 소 : 서대문문화회관 2층 소극장

■ 대 상 : 9,197명(민방위 1~4년차 대원)

■ 교육일정 : 추후 수립예정(문화체육회관 소극장 사용 일정 협의)

■ 교육내용

구분	과목	교육내용	비고
1교시	소양교육	국가·역사관, 한반도 정세, 민방위제도, 사회적재난 예방 등	안보강사
2교시	실기교육	화재, 교통안전 등 생활안전	실기강사
3교시	생활문화	마술, 음악 등	문화공연
4교시	생활복지	보건, 복지, 보육, 평생교육 등	직원/전문가

2. 비상소집훈련

■ 기 간 : 2016. 4월 ~ 11월 (06:50~07:50)

○ 기본훈련 : 2016. 4월 ~ 6월 (상반기)

○ 보충훈련 : 2016. 9월 ~ 11월 (하반기)

■ 장 소 : 미동초등학교 외 12개 학교 운동장

■ 대 상 : 11,670명(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)

■ 교육내용 : 민방위대 편성, 임무·역할 고지, 대피·급수시설 위치 안내 등

3. 민방위대장 교육

- 일 시 : 2016. 9월중(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와 병행 실시)
- 장 소 : 서대문문화회관 3층 대극장
- 대 상 : 통 민방위 대장(직장민방위대장은 3월~11월 교육실시)
- 교육내용 : 민방위대장 임무·역할 등 소양교육 및 화재·교통안전 교육

4. 기술지원대원 교육

- 기 간 : 2016. 3월 ~ 11월 (09:00~13:00)
- 장 소 : 서대문문화회관 2층 소극장
- 대 상 : 225명(민방위 1~4년차 대원)

5. 민방위대원 교육 편의 제공

- 오후교육, 야간교육, 일요교육 실시
- 상설교육, 현지교육, 자율참여 등 적극 홍보·안내

6. 생활민방위 교육

- 교육기간 : 2016. 3월 ~ 11월
- 교육대상 : 여성, 노인, 어린이, 학생, 장애인, 다문화가정 등
- 교육내용
 - 심폐소생술, 화재, 교통안전 등 생활안전 내용
 - 지진, 태풍, 홍수 등 자연재해 및 각종 재난 발생시 대처요령
- 교육강사 : 서울시 민방위강사 및 서대문소방서 소방관
- 교육방법
 - 경로당, 사회복지시설, 어린이집, 학교 등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
 - 다문화 가정 등 개별 희망 주민은 일괄 모집후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 실시

III 교육 운영

1. 교육운영절차

■ 국민안전처 2016년 교육지침시달 → 서울시 → 자치구 세부교육훈련 수립
 → 교육훈련 통지서 발부 → 교육실시 → 교육참석·불참자 정리 → 교육실시
 결과 서울행정시스템 입력·보고

연간 교육계획 수립·시달
(1월중)

▶ 국민안전처 → 서울시 → 자치구



지자체별 세부교육계획 수립·보고
(1~2월중)

▶ 자치구 → 서울시 → 국민안전처
 * 강사 교육 및 담당자 연수 등 추진
 ▶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교육 홍보



교육훈련통지서 발부
 .본 교육 : 교육실시 7일전까지
 .보충교육 : 교육실시 48시간전까지

▶ 교육훈련 통지서 발부, 교육안내 등



상반기 교육 실시
(3~6월)

▶ 상반기 : 집합교육비상소집훈련(본교육)
 ▶ 유관기관 협의 등 교육운영 사전 점검



상반기 결산 보고
(7.20일까지)

▶ 교육결산 지침에 의거 교육결산



하반기 교육실시
(8~11월)

▶ 하반기 : 집합교육비상소집훈련(보충교육)
 * 11월은 불참자 최종 교육 및 훈련 실시
 ▶ 유관기관 협의 등 교육운영 사전 점검



불참자 과태료 부과 및
 서울행정시스템 교육결산
(12.31일까지)

▶ 과태료 부과, 주민등록 정리 등
 ▶ 동 → 자치구 → 서울시 → 국민안전처



교육결산 보고
('17. 1. 20일까지)

▶ 총평, 문제점 등 종합 분석, 통계관리
 ▶ 동 → 자치구 → 서울시 → 국민안전처

2. 교육면제 및 유예자 관리

■ 교육면제

○ 관련근거

-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, 같은법 시행령 제31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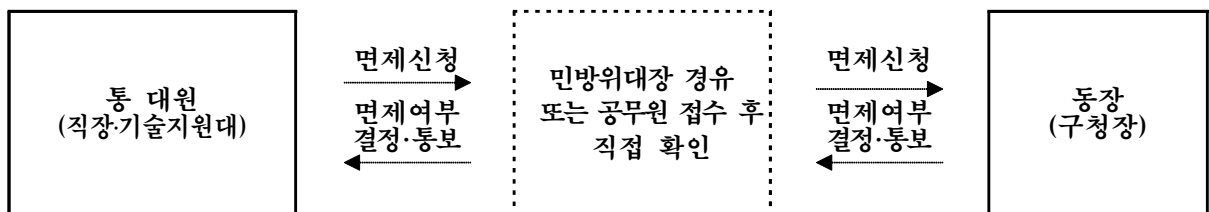
○ 면제대상
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
-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
-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·응급대책·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자
- 의료·전기·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자
-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

○ 조치방법

-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신청서(별지 제22호 서식) 및 면제사유 증빙서류를 해당 동장(기술, 직장 민방위대원은 구청장)에게 제출
 - 재소증명,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, 자격증사본, 유예사유존속증명 등

○ 면제절차



- 면제사유 소멸신고 : 7일 이내 구두신고
- 면제신청서 제출시 민방위대장 경유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 가능 (담당공무원이 직접 민방위대장의 확인을 거쳐 면제여부 결정·통보 처리)

■ 교육유예

○ 관련근거

-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(제26조 제3항 준용), 같은법 시행령 제30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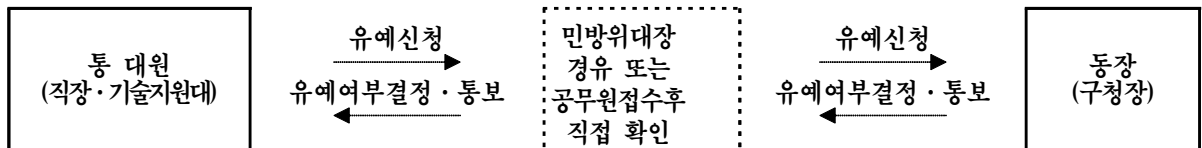
○ 유예대상

-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
- 관혼상제, 재해,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
 - 3월 미만의 해외여행, 일시수감,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, 개성공단 근무,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

○ 조치방법

-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신청서(별지 제22호 서식) 및 유예사유 증빙서류를 해당 동장(기술, 직장민방위대원은 구청장)에게 제출

○ 유예절차



- 유예신청 첨부서류 : 의사, 통대장, 관계기관장 확인
- 유예신청서 제출시 민방위대장 경유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

IV 중점추진사항

- 교육 집중도 제고를 위한 문화공연 지속 실시(3교시)
- 관내 학교 대상으로 학생 프로그램 등 발표 기회 제공(3교시)
- 금연, 치매, 음식, 방사능, 평생교육 등 다양한 건강·생활정보 제공(4교시)
- 주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 안내 기회 제공(희망 부서에 시간 배정)
- 사회적 재난 예방 및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소양교육 실시
 - 자살예방, 환경·에너지, 사회적·국가적 이슈 등
- 교육종료 후 설문조사를 통한 강사평가 및 교육생 요구 적극 수렴

V 행정 및 협조사항

- 비상소집훈련시 방송장비 지원(스피커, 마이크 등) : 행정지원과
- 생활정보 안내 희망 부서 교육자료 제출 : 전부서
- 학생 프로그램 발표 희망 학교 수요 조사 : 자치행정과
-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철저 : 지역·직장대
 - 기본교육 1주일 전, 보충교육 48시간 전 본인에게 전달
 - 통지서 수령증 보관 철저(과태료 부과 근거자료)
 - 통지서 전달 안내 스티커 적극 활용(통장)